

#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제도 개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국회의결—

확인수수료 폐지 · 확인 면제 범위 확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요지

- 1. **기름 및 연탄보일러 시공업 지정제도** : 일반건설업, 설비공사업 면허자가 보일러 시공업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시공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1조). 그리고 여타 보일러 시공업자는 종전과 같이 시공업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시공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기름 및 연탄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제도** : 시·도지사가 확인하되(제44조) 확인 수수료는 폐지한다(제83조). 단, 설비공사업 면허자가 보일러 시공한 것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예정.
- 3. **열관리시공협회 회원 의무가입 제도** : 설비공사업 면허자등 신고로서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는 열관리시공협회(법정단체) 회원의 자동가입에서 제외한다(제70조).

###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제도등 대폭 개정

일반건설업, 설비공사업 면허자가 보일러 시공업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시공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기름 및 연탄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열관리시공협회의 회원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설비공사업 면허자등 신고로서 시공업을 인정받은 자들은 이 협회 회원으로의 자동가입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개선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던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제도등이 보일러 사용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기름 및 연탄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제도는 그동안 열관리시공협회가 보일러 1대당 3천원~1만7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또 설비공사업자

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인 이상의 기술자 및 설비기술장비 등 우수한 기능인력을 보유하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난방설비공사를 종합 시공·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기름 및 연탄용 보일러만은 별도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설비공사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이 제도의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감사원으로부터도 보일러 사용상 위험성이 높은 가스보일러는 설치·시공 확인의 수수료 부담 없이 보일러 시공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시공확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기름 및 연탄보일러만은 설치·시공을 별도의 단체에서 확인 받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케 함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제도의 시정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 본 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난방보일러 시공제도 개선 결의문 채택, 관련부처에 건의

본 협회는 제1회 정기총회(1990. 3)와 제5회 총회

(1991. 8)를 통해 「난방보일러 시공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결의문에서 “주택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거,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종합 책임시공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한 보일러 시공업 지정을 이종으로 받아야 함은 물론 보일러 시공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건축물 난방설비공사는 설비공사업 면허 소유자가 보일러 설치 및 난방배관 등 기타 일체를 종합적으로 단일 책임·시공할 수 있도록 면허를 일원화 하여 주실 것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기름 및 연탄보일러 시공·확인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건의한 것이다.

### 관련업계, 수수료 폐지로 사실상 시공확인제도 실효성 없어질 것으로 전망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중 기름 및 연탄보일러 시공 확인제도의 수수료 폐지는 보일러 시공업자는 물론 실수요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 차원에서 높게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가 없는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제도는 앞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제도는 폐지될 것이라는 모전문지의 분석처럼 관련업계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현행   | 행   | 개정법률  | 비고 |
|--|---|---|----|
| 제27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br>①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br>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br>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br>④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 ①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br>③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일반건설업, 설비공사업 면허자는 신고로서 시공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현행법은 시공업을 할 때에는 모두 시공업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은 설비공사업 면허자 등은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시공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    |

| 현행   | 개정법률   | 비고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b></p> <p>제7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 ①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열설비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br/>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76조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7조 (회원의 자격) ①시공업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b>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b></p> | <p><b>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가입 의무 제외</b>(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회원으로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설비공사업 면허자 등 신고로서 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이 협회의 회원 가입 의무조항에 제외된다)</p>   |
| <p>제28조의2(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 ①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 <p>제44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 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가동전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b>확인</b>의 대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b>동력자원부령</b>으로 정한다.</p>  | <p><b>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확인을 하도록 함.</b> (확인수수료 규정을 삭제(개정법률 제83조 참조)하여 확인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기름 및 연탄보일러의 설치에 대한 확인업무를 하도록 함)</p> <p><b>설비공사업 면허자가 설치, 시공한 기름 및 연탄보일러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토록 시행규칙 개정시 추진</b>(확인대상등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시 설비공사업 면허자가 설치한 기름 및 연탄보일러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토록 추진)</p> |